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88
------------	-------

발의연월일 : 2018. 2. 22.

발의자 : 김상훈 · 강석진 · 성일종
임이자 · 김정재 · 송석준
원유철 · 곽대훈 · 주호영
유재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해당 기관·학교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실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과태료) (생 약) <u><신 설></u>	제34조(과태료)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 과·징수한다.